

보험가격규제관련 이론 및 실증연구 검토

박소정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

보험연구원 9월 산학세미나

보험사 규제

01

가격 규제
(Price
regulation)

02

건전성 규제
(Solvency
regulation)

03

행위 규제
(Market
conduct
regulation)

왜 규제가 필요한가?

시장 실패

-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on)** 아닐 때 실패
 - 완전 경쟁 시장: 같은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거래하고, 정보 비대칭이 없으며,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 될 수 있는 시장
- **작동가능한 경쟁시장 (workable competition)**
 - 완전하지는 않지만 합리적 수준의 경쟁을 유지하고(reasonable), 규제의 개입으로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은 정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Scherer and Ross, 1990)

시장 실패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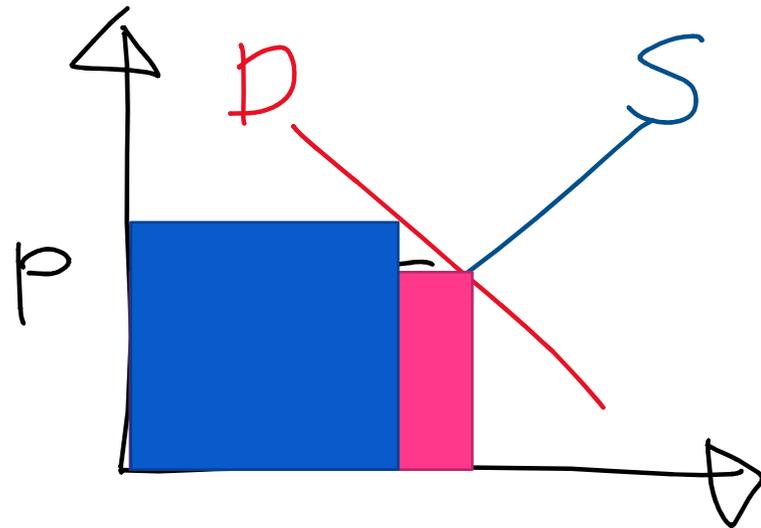
- 독점력으로 과도한 가격의 책정
- 정보비대칭으로 과도한 지급불능 위험 보유

규제의 개입

- (독점)충분한 경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과도한 가격 책정을 막도록 가격 규제
- (정보비대칭)소비자가 보험사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가 모니터링 해 줌

가격 규제

- 시장원리: 수요와 공급
 - 완전 경쟁 시장
- 가격규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
- 정부의 개입:
 - 가격이 과도하거나 과소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격상한제, 가격하한제
 - 초과 수요, 초과 공급
 - 문제의 원천적 해소:
 - 가격의 직접 규제보다는 공정한 시장 형성 (경쟁제한요소 제거): 경쟁촉진, 담합금지, 정보비대칭 해소
 - 담합금지, 시장 진출입 장려, 정보공개



왜 규제가 필요한가?

규제의 暗

- Stigler 포획이론 (Capture theory): 규제자는 이익집단에 포획될 수 있음.
 - 적정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을 가능성도 있음.
 - 강한이익집단이 소비자일 경우: 영구적 가격억제로 시장진입이 원활하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 가능성
- 가격의 비유연성 (stickiness)
 - 가격 인상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 가격인하를 못하게 되거나,
 - 가격 인상이 어렵다가 산업이 위태로운 시점에 대폭 인상하게 됨
 - 가격 고변동성으로 자본비용 상승, 보험료 인상 요인
- 가격 ceiling이 있을 경우 고위험 물건 인수 거부로 시장 축소 가능성

규제의 목적:

- 시장의 실패를 해소하고, 작동가능 한 경쟁시장 조성에 힘쓸 것
- 시장 실패의 결과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원인에 주목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Klein, 2013)

보험 가격과 가격 규제

적정 가격

- 위험을 반영하는 가격
- 원칙: 충분성, 비과도성,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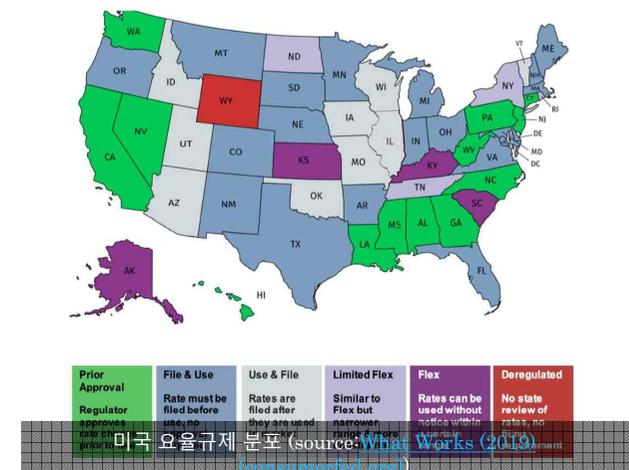
적절하지 않은 가격

- (충분성) 너무 저렴한 가격-가격파괴 전쟁: 유한책임인 보험사의 위험에 대한 도박 (Joskow, 1973)
- 미국 시장 초기 가격 규제(1900s): 보험사 파산에 대한 걱정. Rating bureau에 가입하고, 따라야 함. Anti-trust law의 예외 산업.
- 손해보험 시장 성격의 변화: 화재 → 자동차. 저빈도 고심도 → 분산가능 위험.
- (비과도성) 너무 비싼 가격
 - 산업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독과점 시장 유지
 - 가격 담합
 - 고객의 보험 탐색 비용 >> 과도한 보험료
 - 1944년 이후 가격 규제의 중심 (가격사전규제 + 건전성규제)

해외 보험가격규제 동향

- 보험가격 사전승인제 (prior approval):
 - 보험가격 변경 전에 금융 당국에 사전 승인을 받고 허가 받아 보험 요율 조정
 - 시장 실패가 있다고 인식할 경우 적정요율 적용을 위해 채택하는 규제 방식
 - 과소 가격: 지급불능규제
 - 과대 가격: 경쟁시장
- 미국, EU
 - 미국 1980, EU 1990년대 부터 사전 승인 (prior approval) 의 폐지 방향
 - 미국: 1970년대 37개주 사전승인에서 2019년 13개주 사전승인
 - 유럽: 1994년 third general insurance directive 부터 가격 규제 완화

Figure 7. Regulatory System by State



해외 (미국) 보험가격규제 실증 연구결과

1) 1980년대:

- Harrington (1984, 1987), Grabowski, Viscusi, and Evans(1989)
- 요율규제가 가격인하 효과

2) 1990년대:

- Bajtelsmit and Bouzouita(1998), Gron(1995), Cummins, Phillips, and Tennyson(2001)
- 규제가 요율 자체에 평균적으로는 별 영향 없음. 단, 시장 상황 (경쟁정도)에 따라 다른 결과

3) 변동성:

- MacAvoy, 1977;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1979; Witt and Miller, 1981; Outreville, 1990; Tennyson, 1991; Barth and Feldhaus, 1999
- 사전인가제인 경우 가격 변동성, 손해율 변동성이 큼
- Cummins and Sommer(1996): 자본비용 비효율성으로 보험가격 상승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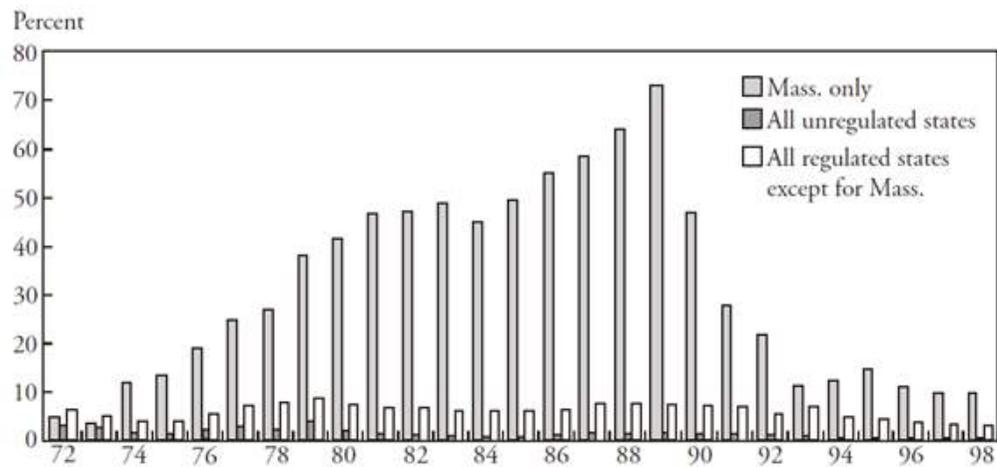
4) 불량물건시장

- Cummins and Weiss,1992; Bouzouita and Bajtelsmit,1997
- 사전인가제, 불량물건 시장 규모 더 큼

5) 가격규제와 채널

- Suponcic and Tennyson(1998), Tennyson(1991, 1993, and 1997): 가격규제가 심한 경우, 직판채널 사용 비율 낮음
- Gron(1991): 대리점의 정치적 영향력이 규제 강한주에서 더 강함
- Weiss and Choi(2008): 규제 강한주의 비용효율성 낮음
- → 가격규제는 가격경쟁 정도를 낮추어, 비용효율성 개선 여지를 줄임. 보험료 상승요인이 될 수도 있음.

불량물건시장 – MA 주



(자료: Tennyson, Weiss, and Regan, 2002)

보험가격규제 연구 결과

- Cummins 2002; Harrington 2002 등의 연구들: 미국시장은 충분히 경쟁적이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값들이 관측된다고 결론

“There is little or no evidence that prior approval on average has a material effect on average rates for any given level of claim costs.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an inability of rate regulation to reduce average rates materially and persistently in competitively structured markets without significantly reducing product quality or ultimately causing widespread exit by insurers.” (Harrington 2002 pp. 310-311)”

Table 1 Evolution of insurance prices 1996-2014 as % of CPI

average	dwelling	health	transport	other
104,26	91,07	164,43	99,58	186,86

Source: Eurostat, HICP COICOP CP12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규제 논리

보험사 과도한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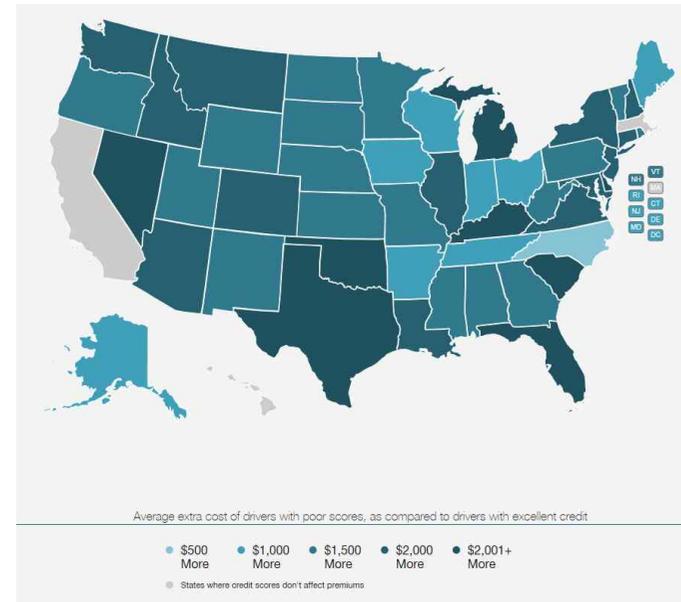
- 담합
 - 모두 거의 유사한 요율 체계를 가지고, 혁신 없이 담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
 - 미국: 보험사별 자동차 보험 가격 차이 큰 편
- 소비자의 탐색 비용
 -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 탐색 비용이 높을 경우,

의무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

-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가입이 힘들어질 수 있고, 사회보험적 성격으로 일정부분 부의 재분배가 필요할 수 있음
 - 요율 차별화 약화 (요율 요소 규제)
 -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적 목적/사회 화합

European Union (2000/C 364/01):

- 1994년 이후 EU는 거의 자율자율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단, 자율요소와 차별화 / **공정성** 측면의 규제는 강화됨
 - 2011년 자동차 보험 자율에 성별 사용 금지
 - 미국도 자율 요소에 대한 규제 (차별금지)는 주별로 온도차를 보이며 강하게 존재하는 편
 - “Any discrimination based on any ground such as sex, race, colour, ethnic or social origin, genetic features, language, religion or belief, political or any other opinion, membership of a national minority, property, birth, disability, age or sexual orientation shall be prohibited.”
- 즉, 규제자는 가격 자체의 결정에는 간섭하지 않고 차별적 요소에 관한 규제만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임.
- EU: 과도한 가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수준이라 판단하며, 건전성 규제, 행위규제에 금융 규제 중심이 옮겨감



(자료: <http://www.consumerreports.org/cro/car-insurance/credit-scores-affect-auto-insurance-rates/index.htm>)

가격비교의 효과

- 가격비교 서비스(Price Comparison Website)
 -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였음.
- 탐색비용과 전환비용에 영향
 - 높이는: 서비스 수수료
 - 낮추는: 쉽게 비교
- 연구결과
 - Brown & Goolsbee(2002): 실증연구, 인터넷이 가격 낮춤
 - Edelman-Wright(2015), Ronayne(2015): 상품,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서 비교가 여전히 어렵고, 비교 서비스 마진이 추가되므로 꼭 가격이 하락된다 볼 수는 없음
- 진입장벽 완화: 신규, 소형사가 비교적 쉽게 신규 고객 유치 가능
- 시장 경쟁 강화로 시장의 혁신 소비자 후생 증대 가능성
- 단, 소비자가 가격에만 신경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약관규제

- 소비자는 비교적 쉽게 가격은 비교할 수 있으나, 약관을 비교하기는 매우 어려움
- 약관과 관련된 규제 여전히 필요
 -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장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소가 빠져있는가
 -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가 숨어있는가
-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다른점에 대해 면밀히 규제

Caution: 자동차 (단기) vs. 실손 (장기)

- (Switching cost)계약변경, 자유로운 이동
 - 자동차: 갱신주기 1년. 비교적 낮은 switching cost
 - 실손보험: 갱신주기 1년이지만, 80세/100세 보장. 실질적 이동 어렵고 갱신 또는 해지. 매우 높은 switching cost
- 전환비용(Switching cost)과 가격
 - 전환비용이 낮을 경우 경쟁시장, 자율시장 논리 적용 가능
 - 전환비용이 높을 경우, 경쟁시장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 기존 고객은 잡아 둔 물고기
 - 가격인상이 손해율을 반영하여 그대로 가능할 때, 손해율을 낮추려는 (보험사기 적발 등) 보험사의 노력이 저하되고,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규제자의 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 캘리포니아 주의 자동차보험 가격규제:
 - 사전요율제를 유지하고 비교적 강한 편이나, 이런 저런 규제의 부작용(불량물건 시장, 시장 퇴출 등)이 크지 않음.
 - 보험사기, 사고율 낮추려는 각종 노력이 동시에 진행. 높은 할인 할증율, good driver discount



감사합니다